

[붙임2]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2021. 10. 산학협력단)

□ 입찰담합의 제유형과 범위반행위(「공정거래위 예규 제374호」)

○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

1.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2.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4.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 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

1. 사업자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수주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여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는 행위)
2.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경쟁 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참여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

1. 사업자 공동으로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여 계속 유찰시키거나 입찰참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2. 공모를 통해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가 포기함으로써 특정업체 이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3.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발주처에 통보 또는 대외공표하여 입찰 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 유도하는 행위

○ 수주물량 등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을 결정 후, 이를 분배하기 위해 입찰 참여자간 배분 등을 결정

1. 참여업체들이 회의 등을 통해 수주물량 및 그 배분물량을 정하는 행위
2. 참여업체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 결정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방해 또는 기타 불이익 제공 등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3. 단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만 응찰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등

-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 관련 사업자의 입찰 가격 및 수주 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미침

1. 원자재 공공구매시 사업자단체가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구성사업자에게 판매물량을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2.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투찰가격 관련 목표 제시 또는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해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행위
3. 특정업체가 입찰참여자에게 수주물량 일부를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거나, 자재구입 사용조건을 미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행위
4.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 일정률을 기부 납부하도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 사용 및 배분하는 행위